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29 선고 2020가단14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3,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는 2015. 6. 10. 소외 H에게 1천만 원을 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소외 F는 H의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1,34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회사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7834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29. “피고(F)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사건의 원고)에게 9,95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13,400,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은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F는 2010. 3.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8. 18.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6. 8. 2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피고는 2016. 12.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F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허위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F의 보증한도금액인 1,3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F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영천시 J 임야 217198㎡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F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F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부동산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있어 연대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F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었는데, 원고의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F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 8,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및 L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기업은행,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8. 18.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F 소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바, 이 사건 2016. 8. 18. F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㉗ 적극재산 : 252,832,000원

① 경주시 N 임야 175㎡ : 1,022,000원

② 경주시 O 답 1693㎡, P 답 1405㎡, Q 답 1131㎡ : 합계 121,810,000원

③ 영천시 J 임야 217198㎡ : 130,000,000원

㉘ 소극재산 : 250,562,360원

① 위 적극재산 순번 ② 기재 R리 소재 3필지 토지에 대한 S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80,000,000원

② 위 적극재산 순번 ③ 기재 영천시 소재 임야에 대한 T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85,000,000원

③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14,000,000원

④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39,000,000원

⑤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9,971,360원

⑥ 주식회사 U에 대한 보증채무 : 9,923,000원

⑦ V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2,608,000원

⑧ W회사 및 X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4,976,000원

⑨ Y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2,366,000원

⑩ Z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2,718,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W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4,976,000원과 X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4,976,000원이 별개임을 전제로 F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255,519,000원[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 법원의 L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1. 10. 8.자)에 기재된

9,952,000원(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18. 9. 20.까지 매월 원리금이 상환되었고, 위

9,952,000원은 2018. 9. 20.기준 원금 잔액 9,952,344원을 천원단위로 기재한 금액이다)으로

산정한 다음 W회사와 X회사의 각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대부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발생일자가 2015. 6. 11.로 동일하고, 그 채무액 역시

동일한 점, W회사에 대한 채무는 2019. 12. 31. 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부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는 동일한 것으로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역시 위 사실조회회보서에는 최초 대출기관인 G의 채무잔액 9,952,000원과 양수인인 원고의 채무잔액 9,952,000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G에 관한 대출정보는 채권양도에 따라 2019. 12. 31.1)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F가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F는 소외 AA에 대하여 9,400만 원, 소외 AB에 대하여 1억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소극재산 중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일부 변제되어 2016. 12. 1. 1,260만 원으로, 2017. 3. 27. 1,008만 원으로, 2018. 4. 10. 790만 원으로 각 감축되었다가 2019. 4. 11. 변제되었고, 위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6. 8. 26. 변제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2016. 8. 18.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수일이다.